##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6204 제출연월일: 2024. 12. 4.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 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1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		
	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u>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u>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u>행위</u>		
<u>다</u> . (생 략)	<u>라</u> . (현행 다목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